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4
----------	------

제출연월일: 2022. 9.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각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울산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와 일부 중복되어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하고,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지역축제의 정의
 - 구청장은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해야 함
- 라.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제척, 해촉(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축제의 결산 및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 수행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2회 연임가능),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 가능
 -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마.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사무국의 설치, 공무원의 파견, 간사(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함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가능
 - 간사는 지역축제별 담당계장, 사무국 설치 시 사무국 직원
- 사. 축제의 위탁 등, 예산의 지원 등, 이용료 징수(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대행 가능
 - 축제 예산, 추진위원회 운영 비용, 기타 필요한 비용 지원
 -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징수 대상, 금액은 구청장이 정함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문화기본법」 제9조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4736호, 2022. 9. 8.)

라. 입법예고: 2022. 8. 29. ~ 9. 19. (22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 주민화합,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심의·육성·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별 담당 국장
2. 지역축제별 담당 과장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선거구 시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문화예술분야, 행사분야, 축제분야 전문가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강사급 이상 교수
3. 지역단위 단체, 종교·역사·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제척) 위원회 위원이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축제별 담당계장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을 설치한 경우 사무국 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축제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 축제전문기관,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하여 그 기획·운영·집행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관련 법인·단체를 보

조사업자로 하여 축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맡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2.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4조에 따른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관계법령, 지원결정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이용료 징수)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또는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해당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구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250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부 칙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문화기본법」 제9조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축제에 대해 축제별 축제추진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위원회와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 비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문화관광과
- 직 급: 행정7급
- 이 름: 심명희
- 연락처: (052)290-3662